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건의 관련 건의민원

【민원요지】

- 민 원 인 : 권*형
- 제 목 :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건의
- 민원내용 : 진천군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조례 발의 청원

【회신내용】

- 우리 군 의회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건의 요청 관련 주민건의
민원에 대하여 소속 의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진천군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에 대한 보호와 체육시설업자의 학생관리·보호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조례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정년제한, 의무사항 신설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
습니다.

- 『진천군 학생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제5조(학교 폭력 예방교육) 제1항에 의거 진천군수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제6조(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제2항에 의거하여 진천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도 귀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진천군의회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진천군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